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CONTENTS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008

주요 용어 설명

- » 아동학대 관련 용어 010
- »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013
- »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014

I.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 1. 아동인권 이해 018
-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020
-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022
- 4. 아동학대 유사개념 036

II. 아동학대 예방교육

-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042
- 2. 신고의무자 교육 043
- 3.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5
-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8

III.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052
-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058

IV. 피해아동 이해와 대화법

- 1. 피해아동의 이해 062
-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63
-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072
-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75

V. 아동학대 신고

-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084
-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085
-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087
-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092

VI. 아동학대 사안처리

-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098
-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100
-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108

VII.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118
-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120
-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23

VIII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 유치원편

1.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31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140
3. 피해아동(유아)과 대화하기	143
4. 아동학대 신고	148
5. 아동학대 사안처리	152
6. 신고의무자 교육	155
7. 아동학대 대응시 외부기관의 역할	157
8. 아동학대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160

IX

Q&A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66
----------------------	-----

X

부록

1. 각종 양식 (예시)	181
2. 유관기관 리스트	196

» 참고자료	232
--------	-----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 학교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학교(유치원)

- 평상시**
 -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유치원은 해당 없음)

징후발견

- 신고 여부 판단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응급상황시

-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 보호방안 마련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신고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적극 협조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화, 등교학습지원 등)
-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학교(유치원)

-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지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 경찰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 기초정보 파악

경찰

- 112 신고접수
-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 지자체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조사

학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장소 협조 및 자료 제공
-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지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경찰

- 현장출동 및 분리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사안처리 및 조치

학교(유치원)

-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지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추가조사
- 사례판단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신청)
- 수사의뢰, 고소/고발
- 진술녹화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 즉각분리 /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경찰

- 전담공무원 협조
- 증거수집,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
- 현장종결
- 수사인계 / 수사 후 사건송치

검찰 및 법원

- 검찰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임시조치 청구
- 법원 : 임시조치 결정,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사례관리

학교(유치원)

-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교육(지원)청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경찰

- 전수합동조사
-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터링

아동보호 전문기관

-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교육·상담·치료
- 가정복귀프로그램

주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 단,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그 연장을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피해아동 등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선임에 있는 개념

장애인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상을 포함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성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방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9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아동학대 관련 용어

친권

-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됨
※ 자녀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때 대리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학, 전학, 퇴학, 유학 등 신분 관계 변동 시 동의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양육권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보호·교양할 권리로 직접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을 같이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존재하나 이혼 등으로 분리될 수 있음

미성년 후견인

-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 「민법」 제928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집단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입학

- 학교에 들어감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취학지원

- 학대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 신청 가능

취학관리전담기구

-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7조2

출석인정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교학습 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8]

유치원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의 결석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2)

집중관리 대상자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으로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2~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긴급 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되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19조

임시조치

-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보호처분

-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처분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피해아동보호명령

-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임시 보호명령

-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검사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보조인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각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가 변호사 등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조인이라 하며, 피해아동의 경우는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49조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가정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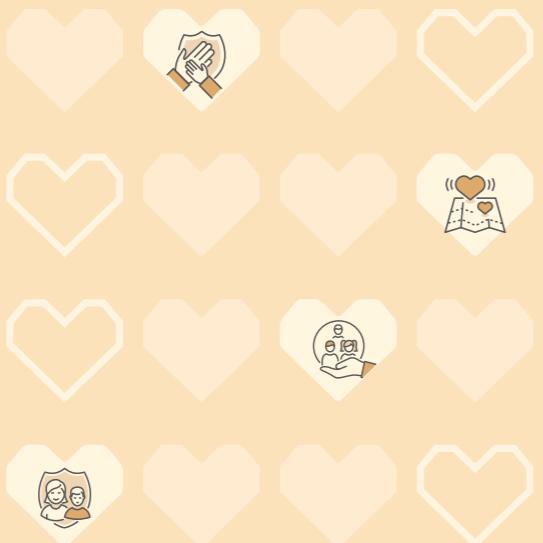
-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4. 아동학대 유사개념

1. 아동인권 이해



아동인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아동권리현장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현장> 제정
- 전문과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현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아동권리현장 주요 내용

- | | |
|------------------------------|----------------------|
| ❖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 ❖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
| ❖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 ❖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
| ❖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
| ❖ 존중받을 권리 | |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아동학대 관련 정의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성년)을 말한다.

『민법』 제4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 할퀴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훼扈, 신체 부위 끓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심한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 거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간혈증,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가 욕설을 하는 자녀를 때림

- 피고인은 피해아동(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집에서 키우던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아동이 “씨*”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자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131)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지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가 이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른 아들(피해자의 형)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수회 때리도록 지시하고, 다른 아들이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155)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참

-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93)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폭행을 함

-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3학년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피해자(17세)가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네가 뭔데, 이 새*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새*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야”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403)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운동선수가 무단 훈련 불참했다는 이유로 때림

- 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14세)가 운동을 계을리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밀대 자루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마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2039)

교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 때림

- 피고인은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이다. 피고인은 1학년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아동(15세)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일으키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27)

방과후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들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때림

-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이다. 피고인은 방과후수업에 참여한 피해아동A(10세)가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들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A의 귀를 3회 잡아당기고 막대기채로 발바닥을 3회 때리고 막대기채로 배를 3회 찌른 후, ‘병*, 미**, 씨*’라고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B(10세)가 수업시간 중 다른 아동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B를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면서 ‘씨*, 개**’라는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아동B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아동C,D,E를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단629)

▶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
-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함

- 피고인은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10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치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폰을 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00)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게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A(14세), B(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망치로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3072)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1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50)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8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느냐, 빅대가리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옮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936)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수업시간에 답변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공개적 모욕을 줌

-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같이 명청하고 덜덜어진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명청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넌 그냥 입 닥치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부모 닮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E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 안 산다”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네 집에 가봐야겠다. 나는 네 부모 허락 없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 네 엄마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504)

수업시간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를 때림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밀어 폭행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아동을 불러 이야기하다가 아동이 울자 위협적으로 말하며 머리를 때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77)

수업시간에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온도계로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돼지, 너는 왜 똥똥하냐”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031)

▶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 성병 감염 및 임신
- ❖ 잣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 ❖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 ❖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 ❖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는 성폭력범죄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처벌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강간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막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하거나 친부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부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지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97)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함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앓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합81)



피해자에게 '후궁'이라고 표현하며 팔을 주무름

-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역사교사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설명을 위한 재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후궁 이리 와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47)



학교 일상 및 수업시간에 반복적 성적 행동과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중학교 수학교사이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A(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늦은 피해자 B(15세)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각지를 끼었다. 피고인은 수업 진행 중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D(14세) 등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지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기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지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자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칭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행동적 칭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품행장애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피해아동에게 기본 보호, 양육, 교육지원을 소홀히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10세,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며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음에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556)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방치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37)



친부가 자녀에게 수회 신체학대를 하였음에도 친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말리거나 피해아동과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61)



친모가 이혼 후 자녀만 집에 두거나 식사를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둠

- 피고인은 친모이다. 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 두 딸을 집에 두고 새벽에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러차례 반복하여 기본적 보호없이 잠을 자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쟁기지 않고 주방 및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384)

4. 아동학대 유사개념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주요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가정구성원(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 미만)	학생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가해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

참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 측이 원할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 가능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 아동학대와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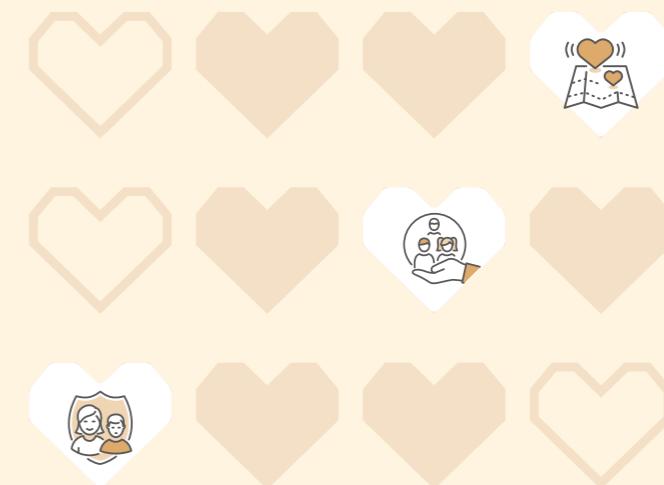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I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2. 신고의무자 교육
3.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구분	역할
아동학대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대상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수시 교육 -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설명회 및 행사 때 대면 교육, 가정통신문(종이, 모바일) 발송,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등 적절한 방법 시행 -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47P 예방교육 자료 및 주요 사이트 참고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 존중 강화 교육 및 감수성 증진 - 아동의 문제 행동의 이해와 원인 파악 및 대처 -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방안 마련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 학교 등 교육기관의 역할

2. 신고의무자 교육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학교장과 그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를 모두 포함함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및 위탁·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집합, 대면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 아동의 권리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 학교 및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 원	300만 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교육연수원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검색 - '아동학대' 검색 / 메뉴 - 법정의무교육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경기도 자식(GSEEK) (gseek.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 메뉴 - 온라인학습 - 의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

3.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교육개요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및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코로나19 상황별 방역지침 준수하여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신고
- 위기 상황별 대처 및 예방법
- 아동학대 처리 절차 및 처벌
- 아동학대 후유증 및 회복 방안
- 아동학대 관련 전문(도움)기관 정보



교육구성 및 운영

-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실시 가능
-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 일상생활에서 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mo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 교육부- 교육부소셜미디어- 유튜브(YouTu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mohw.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자료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 유튜브(YouTube)- 보건복지부-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동학대예방 VR체험 인터뷰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자료실 - 아동학대/아동권리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홍보자료 - 동영상·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훈육과 학대 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경찰청 (polic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경찰청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이가 위험해요 송♪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기관	자료현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신청 - 아동,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관련 강의(집합, 사이버) • 교육자료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학교급별 자료 다운로드 가능
대검찰청 (spo.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대검찰청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 학교급별 교육내용 및 교육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6]

실시 주기(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중·고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



- 입학설명회, 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진행
-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관련 교육 동영상 상영, 강의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상담·부모교육
-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및 홍보물 탑재
- ※ 코로나19 상황별 방역지침 준수하여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 개선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등



- 아동학대피해아동(학생)의 치료
- 아동학대의 발견
-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발견, 신고 시 유의사항
- 아동 중심의 올바른 양육(훈육) 및 의사소통 방법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학부모의 역할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mo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 유튜브(YouTube) - 교육부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 우리 모두의 관심
학부모 On누리 (parent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On누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건복지부 (mohw.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보건복지부-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동학대예방 VR체험 인터뷰
경찰청 (polic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경찰청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대검찰청 (spo.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대검찰청-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EBS (ebs.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EBS교양-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II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미인정결석 등 평상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 미인정결석 이후 질병결석, 교외체험학습 등 결석이 지속 반복되는 학생 발생 시 상담 및 관찰을 통한 위기징후 탐색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징후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징후 파악을 통한 신고 여부 판단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 필요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보건교사,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전문가 * 협조 의뢰 * 장애아동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등
아동학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응급상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확보 및 보호 -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관련 자료 제공 협조 -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등교학습지원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정 방문 등)가 어려울 시 피해아동의 안전점검 또는 일상생활 모니터링 협조할 수 있음 -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 유관기관과의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 위한 협력 등

※ 피해아동은 학대로 인해 학업이나 교우관계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피해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학교 협조가 잘 된 사례

신속한 신고 사례

-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과 지속적 상담을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학생에 의하면 모는 성적이 떨어지면 '죽어라', '쓸모없는 *' 등 폭언과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고 함. 상담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를 파악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 후 학교장에게 보고함

조사 협력 사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면조사 진행 시 아동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에 거부감을 보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사가 아동을 설득하였으며 상담실 지원 및 조사 시 교사 입회하에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함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합동조사 협력 사례

-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경찰과 협의하여 아동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합동조사를 진행함. 지자체는 사례판단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기관별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

비밀전학 협조 사례

- 친부가 모와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 폭행으로 아동학대 판단되어 친부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친부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피해학생 비밀전학 지원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함

등교학습 지원 사례

- 성인인 형제가 아동인 형제를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분리되었으며, 쉼터와 원적교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워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등교학습 신청을 적극 협조하여 아동은 쉼터 인근 학교로 등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시설 분리 아동의 학업유지 조력 사례

- 우울증인 친모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오랜 기간 노출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분리되었으며 학대행위자인 친모는 의료기관 등 위탁(임시조치 제6호)으로 병원에 입원함. 아동은 학업의 열의가 있어 쉼터 생활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 및 추가적 학습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이에 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

교육(지원)청의 역할

대응 절차	교육(지원)청의 역할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사안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대상 학대 사안 발생 시 '장애인권지원단'과 공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관련 적극 협조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공의 예시 : 시설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제공 등 - 교육(지원)청에서 피해아동 등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학교의 협조를 통해 피해(의심)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조사를 고지하고 목격자 신분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참고 교육(지원)청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 총괄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취학관리전담기구 설치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취학관리전담기구의 업무

-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 제25조 제4항 또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 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외부 기관의 역할



기관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 <아동보호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p>*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p>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위기 환경 아동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e아동행복지원시스템)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주기적인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 정보 공유 실시
(21.8. 관계부처 협동)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된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등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재)학대 여부 면밀 관찰

참고 정보 공유의 목적은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이라는 사유만으로 교사 등이 학대 신고할 의무는 없음

◎ e아동행복지원대상자 발굴 개요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및 제66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기 가구 발굴 목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명단 생성



활용 지표(44종)

아동 특화변수(아동학대 이력 등 10종)
행복e음 연계변수(아동복지시설 퇴소 이력 등 6종)
복지 사각지대 발굴변수(자해 시도자 등 28종)

- 발굴된 대상자 정보(분기별 80만)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읍·면·동 등 지자체 현장 방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정보 공유 개요

- 법정부적 책무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교육 부문 간 정보 공유 활성화 긴요
- 당초 지자체에만 공유되던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 정보(e아동행복지원대상자 정보)'를 교육부문에까지 공유 확대('21.6.~)
-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발굴 및 피해아동 신속 지원

※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아동학대 예방, 취학관리전담기구, 교육복지, 나이스, 유치원 업무 담당자 등) 협조 긴요(예: '정보 관리 위원회', '위원회' 등 구성)

IV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피해아동의 이해와 대화법



1. 피해아동의 이해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1. 피해아동의 이해



아동학대의 후유증

- 아동·청소년기의 학대피해는 건강·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침
-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및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신체적 후유증

- ❖ 신체적 손상, 성장의 지연
- ❖ 신경전달체계 이상으로 인한 생리기능의 변화 등

심리적 후유증

- ❖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 ❖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자기 개념의 손상
- ❖ 학교 부적응, 애착 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성 위축, 자학적 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정신병리 등

◎ 아동학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 |
|-------------------------------------|---------------------|
| ❖ 학대 및 방임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 ❖ 아동의 기질, 성향 |
|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의 유형 | ❖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 |
| ❖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 ❖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
|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 ❖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
| ❖ 학대 이후의 생활 | |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화 진행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¹⁾ 관점으로 접근 가능
- 학대피해아동과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학교 현장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 가능

1)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 학대피해아동과의 초기 대화법

- 피해아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수치스러움 등을 느낄 수 있음. 초기 대화 시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

“수는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되었네요. 원래는 무엇을 하려 했었나요?”
 “요즘 어떤 것에 흥미가 있나요?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인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잘하나요?”



피해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음

- 일상적 대화를 통해 피해아동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 후 아동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사의 마음을 담아 상황에 대한 질문 진행

“최근에 힘도 없어 보이고 몽도 피곤해 보여서 그런지 경기력이 저하되었네요.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요즘 학교(집 등)에서 어떤 게 지나가는지 궁금해요.”

“어떤 (학교/집/학교 등) 경기력이 있나요?”

“0~100점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것은 자가 0이요, 10점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이고, 1점은 모든 0이요,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이라면, 오늘 몇 점 정도 도나요?”

“(8점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경기 10점이 힘들어서 8점인가요? 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힘든 때에는 그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어떤 경기력이 (언제/누구와/어디에서) 있나요?”

“0001번 팀에 양이 있고 주는 사람(친구 등)은 누구인가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친구 등)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친구 등)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수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볼까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아동학대 사안 진행 단계에서의 대화법

- 아동학대 사안 진행 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에 지지와 격려를 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 시작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재미있었던 후은 짐승 할 수 있었던 일(수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친구들과는 어떻게過ご했나요?”

■ 피해학생의 대처에 집중하고 인정하기

“어떻게 오늘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나요?”
 “그렇군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학교에 와서(지나칠 수 /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수업에 짐승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친구들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나요?”
 “수고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는 피해학생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친구와 지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끌어 내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단어임

■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요즘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조금 (나아지면/ 달라지면/ 좋아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것들이 조금 (나아지면/ 달라지면/ 좋아지면) 집에서 가족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00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참고 학대피해아동과 대화 시 주의사항

- ❖ 피해아동과 면(상)담을 진행 시 사전에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음
- ❖ 피해아동과 대화 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함
- ❖ 편안한 말투와 함께 적절한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함
- ❖ (사건에 대해 직접 묻는 등) 조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함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
 - * 교사와의 대화로 인해 이후 조사 시 정확한 진위를 탐색하는 데 잘못된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
- ❖ 피해아동과 대화 시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 ❖ ‘누가 힘들게 하나요?’라고 대상자를 특정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함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화법

- 피해아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내 온 경험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해결 및 회복을 돋는 대화 필요
-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중요
- 피해아동이 도움을 원할 시 앞으로 학교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눔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다면) 어떤가 하면 괜찮은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지 않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 같나요?”

- 이전에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대화 진행

“예전에도 지금처럼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걸로 어떤가 가능했나요?”
 “이전과 지금이 어떤가요?”

- 피해아동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이야기할 시 교사는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

“주변에서 나는 (아동으로) 어떤 점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걸로 어떤가 가능했나요?”
 “현재로 그런 모습을 어떤가 유지할 수 있었나요?”

- 피해아동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안하여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위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

“(이전 경험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걸 계속해보는 건 어떤가요?”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²⁾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시작하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00(자녀)이는 어떤 아동인가요?”

■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이번 상황이 정리 또는 해결되면 000(아동)은 어떤 달라질까요?”
 “어디나((어디나)는(은)) 어떤 상황을 희망하시는지요?”

2)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 긍정적 경험 알아보기

“

“0001를 양육하면서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쳤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때 어머니(어버니)는(은) 000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그걸고 조금이라도 비슷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 이미 있는 강점 인정하기

“

“어떻게 이전과 다르거나 000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요?”
 “000에게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0001가 000(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나요?”

”

▣ 효과 있는 것을 더하기

“

“지금처럼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혹은 효과가 있었던 무엇이라도(어떤 것이라도) 계속 010시나(지속)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참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와 대화 시 유의사항

- ❖ 보호자가 교사와의 대화에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함
- ❖ 판단을 중지하고 부모의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공감함
- ❖ 보호자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인 경우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청함
- ❖ 보호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면담하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함
- ❖ 보호자 면(상)담을 나눌 때 ‘학대’라는 단어 사용을 유의함
 - *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음
- ❖ 타 기관에서의 말을 전달하지 않음 :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적 또는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

참고 이주배경(다문화) 아동 보호자 대상 대화 시 유의점

- ❖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근거)
- ❖ 피해아동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배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어나 편하하는 표현 주의 예) “한국에선 이 정도는 교육 목적으로 해요”, “그 나라에선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하나 보죠?”
- ❖ 이주배경 대상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³⁾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⁴⁾

- 장애아동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님
- 장애아동은 학대에 취약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 또래보다 이른 나이부터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될 수 있음
- 학대피해아동이 보일 수 있는 징후가 평소 장애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학대 징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학대피해 장애아동 발견 시 유의점

- 학대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 필요
-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대가 은폐되고 있는지 면밀히 주의
- 장애로 인한 행동에 대해 훈육 합리화 또는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이 학대(고통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
- 장애아동에게 발견된 신체적 징후가 장애아동의 특성 혹은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학대 의심 필요
- 장애로 인해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이나 특별한 보살핌(과잉보호)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학대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살핌

3) 본 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ADHD나 풍행장애와 같이 DSM-5 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기 장애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본문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장애아동이라 기술함

4) 참고 : Legano, L. A., Desch, L. W., Messner, S. A., Idzerda, S., Flaherty, E. G., ABUSE, C. O. C., ... & Yin, L. (2021).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diatrics, 147(5)

참고 장애아동 대상 경제적 학대 발견 및 지원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말함.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와 소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됨. 따라서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경우 또는 사례관리지원팀이 있는 경우 협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의 예시

- ❖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흔히 명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명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명이 든 신체 부위
- ❖ 뇌병변 발작에 의해 넘어져 흔히 명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명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명이 든 신체 부위
- ❖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한 간지럼증, 건조증 등으로 인한 피부 상흔(손자국, 극힘)과 학대로 인한 상흔
- ❖ 장애로 인한 자해 상흔과 학대로 인한 상흔
- ❖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이동과 근육 움직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극힘 등)과 상습적 학대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극힘 등)

판례로 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



전담보호업무 중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 언행을 함

-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가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쓸어, 야! 야!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청소하는 법을 잊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뭐야? 금붕어야? 다 깎았어? 깎으면 네가 옳은 거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971)



자폐성장애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며 뒤통수를 때림

- 피고인은 담임을 맡고 있던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아동 B(11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합34)



생활재활교사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정서학대를 함

-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13세, 중증지적장애)가 전일 장난을 치다가 강당 벽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짜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명이 들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중증지적장애)가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손등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0)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 진행
- 교사는 피해아동과의 대화 중 사실 확인을 위해 대답을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 장애아동 및 사안 관련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 연계·활용 가능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은 일반 아동과 동일하나 장애로 인한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질문 진행함이 효과적
-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 존중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와 확인 필요(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한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을 주의하고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아동의 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야 함

5)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피해아동의 이야기의 거짓 없음을 믿어주고 경청하여 격려하면서 현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

◎ 장애별 학대피해 아동 면담 시 고려해야 할 점⁶⁾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아동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
- 지체장애아동이 휠체어 이용 시 이야기하기 편안한 위치를 잡은 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 면담 진행
-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의사소통 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조력의 내용을 면담 전에 안내
-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면담하며 지체 및 뇌병변장애아동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
-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예민하고 위축되어 면담 시 긴장감 등으로 근육이 더욱 경직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순간적으로 심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 진행
- 진술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경우 2~3회 되물어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정중히 물은 뒤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진술 내용 확인
- 근육의 경직 변형 부정확한 언어사용이 있다고 하여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

시각장애

- 시각장애아동은 많은 음성이 중복되고 시끄러울 경우 상황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 면담 시 주변이 시끄럽거나 번잡한 장소 등은 피함
- 면담자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
- 시각장애아동이라고 하여도 말소리의 방향을 모두 인지함.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인 시각장애 아동을 바라보면서 대화 진행
-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필요가 있음
- 해당 장소에서 시각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 비언어적 표현은 지양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주변 사물 등에 대해 구체적 묘사를 진행
- 면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경우 돌아왔다고 이야기함
- 시각장애아동의 시력상태를 파악하여 확대경 돋보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서를 직접 읽어주거나 그 외 지원인력을 통한 대독, 면담자의 낭독,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화면 낭독프로그램 등 편의 제공이 효과적
-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은 뒤 도움을 요청할 경우 팔을 시각장애아동에게 내주어 잡게 함
- 제3자와 대화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줌

청각장애

-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장상황 중심으로 객관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전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확인
-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면담 시 수어 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요청
- 수어통역사 등과 같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을 보며 진행
- 청각장애아동, 면담관, 수어통역사의 자리배치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 것이 필요. 수어통역사는 장애아동을 마주보게 함.
- 구화가 가능한 경우 대화 시작 전 시선을 끌어 집중을 유도하며 대화 시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
-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음
- 수어 외에 구화 입 모양, 몸짓 필담, 메모나 컴퓨터 자판 등 이용 가능

언어/의사소통 장애

- 대화의 속도를 줄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짧고 간단한 문장 구사
- 면담 시 얼굴,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면담 시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아듣기 힘든 경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보조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 확인 진행
- 대화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하며 청각장애가 동반될 경우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함

지적장애

-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개방형으로 진행
- 계속해서 “예”라고만 답하는 경우 질문의 형태를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장애아동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
- 장애아동이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
- 주의집중력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휴식 시간을 제공
- 지적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 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주고 면담시 질문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진술을 할 경우 휴식 등 면담 중단 후 재개
- 필요시 시각적 자료인 사진이나 그림 등의 보완대체 의사소통(AAC)를 사용할 수 있음

6) 참고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경남지방경찰청(2019).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자폐성장애

- 낯선 사람이나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내용 설명과 숙지 필요
- 다양한 자극(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조명 등)에 흥분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여 안정된 환경 제공
-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 자행동을 보이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강압하지 않아야 하며 동성 면담원이 손을 꼭 잡아 준 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상동 행동,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강제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잠시 기다려준 뒤 안정되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봄
- 면담 시 동일한 대답 예 또는 아니오가 반복될 경우 이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질문의 형식을 바꿔 질문하고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사용
-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대답 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따라 하는 반향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입니까 B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처럼 말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음
-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되지 않는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호흡기·신장·심장·뇌전증·간·장루·요루장애

- 면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살펴봄
- 미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을 맞춰 투약할 수 있게 함
- 장루 · 요루장애아동의 경우 대변 또는 소변을 위한 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코를 징그리거나 코를 막는 행동은 삼가야 함
- 호흡기 장애의 경우 냄새, 향수, 담배 등에 민감할 수 있음



정서·행동장애아동(ADHD, 풍행장애 등)

- 면담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서·행동장애아동이 안정감을 가지고 면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 있음
- 면담 시 아동이 원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 다그치거나 압박 면담을 할 경우 이상행동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만약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물건(가위, 칼, 날카로운 물건 등)은 치우도록 함
-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딱딱한 표정이나 눈맞춤을 하지 않는 응대 등은 지양
- 수개념·시간개념·추상적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면담 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 불가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함
-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행동문제가 소거 또는 최소화되므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함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말이나 글을 대신하기 위해 그림카드, 의사소통판, 음성출력도구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의사소통을 돋기 위한 것

· 현재 국립특수교육원(2020)에 의해 몸짓 상징 손담 272개의 필수단어가 개발되었고, 스마트폰 AAC앱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손담 다운로드 : <https://www.nise.go.kr>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시 유의점

- 일반 아동과의 대화와 동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 진행
- 장애아동의 경우 따로 상담실로 부르기보다 아동이 있는 곳에 교사가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요?” 등)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림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으며 낯선 장소나 활동 보다는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가능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허락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하고 확인 필요 (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에 주의 및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⁷⁾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힘드셨겠어요.”라는 대화 보다 “정말 잘해 오셨네요.”, “정말로 노력해 오셨네요.”라는 긍정적 응대가 효과적
- 할 수 있는 것과 실패한 것을 이야기 했다면, 천천히 여유있는 태도로 “실패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군요.”라는 순서로 되풀이한 대화 시도 진행



장애 피해아동 보호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화 말을 들어주지 않아 짜증나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면담자

“전화 말을 듣지 않아 대화하기 힘드셨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오셨네요.”



7)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이영분, 김현준, 조추용(201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기술. 학지사

V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아동학대 최초 인지



수사기관(112) 신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 요청사항을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학교는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및 사안보고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아동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은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임 또는 상담교사 동석 가능(단, 진술 개입 금지)

-
-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수시 보고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1항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참고 장애아동학대 의심사안 신고 절차 및 대응

-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자체없이 수사기관(경찰),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1항) 신고
- 장애아동 학대의심사안 발생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포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분리보호, 사례관리 등의 대응이 진행되며, 피해의심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경찰, 시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신고접수: 1644-8295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신고 방법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모바일앱 : 아이지김콜앱(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아동학대 상담전화 : 129

아이지김콜앱의 기능

- 전화 신고가 막설여지는 경우 앱으로 신고 가능
-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등 정보제공
- 아동학대 징후 파악을 통해 상황을 점검 후 신고 가능
- 다운로드 방법
 - ‘앱스토어(iOS)’ 및 ‘PLAY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또는
‘아이지김콜앱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

아이지김콜앱 QR코드



IOS용

안드로이드용

참고 신고 전화 (예시)

- 00학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00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 아동의 현재 상황은 합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아동의 인적 상황은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그 외 당부사항은입니다. (신고자 요청 사항 활용)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 등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에 대하여 요청사항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 교육하는 직무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학생상담,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신고에 필요한 내용

▣ 아동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 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기타상황 등 제공 가능하며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시 주의사항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신고 자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피해학생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학교 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등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학교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사례

아동의 학대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됨

- 학교에서 아동의 학대피해 정확한 후 신고하였고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학교로 출동하기로 함. 교사는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복도에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다림. 하교 중이던 다른 아이들이 보게 되었고 아동의 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함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시 주의사항



보고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정보 공유나 노출 금지 <서식 2> <서식 2-1>

사안 관련 공문작성 시 주의

- 대국민 공개 여부 : 비공개 6호, 목록 비공개
- 열람 범위: 열람 불가
- 열람 제한 기간: 설정 안 함

참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

-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상담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언론 대응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 개인 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임
-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학교관리자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교사 면담, 동선 구분, 수업 교체, 담임 교체 등)을 할 수 있음
※ 세부 절차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름
- 이때 학교장은 피해 아동의 보호, 사안의 경증, 2차 피해 예방,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타 학생의 학습권 및 목격자 진술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관기관 및 교육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요청 가능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교직원의 임무) 제①항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제①항 제4호 마목.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 조치 가능

신고자 보호조치

-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5조

참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학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학교(교직원)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
-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서식 2><서식 2-1>
-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또는加害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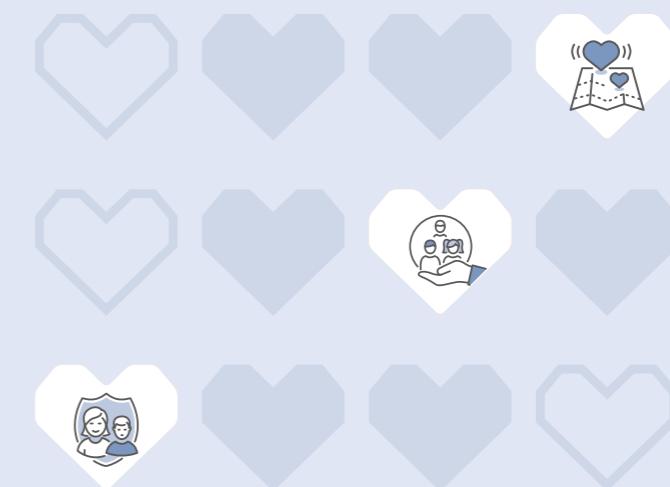
참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교원이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상 보호

-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 및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함
 - * 보호조치 :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시도교육청에 설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법률·심리상담·복귀지원 등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V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단계별 대응절차

신고 접수

- ▶ 신고접수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모바일 앱 : 아이지김콜앱(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



조사

-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 지자체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 판단
- ▶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례판단 결과 통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학교의 역할

역할

-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 강구
 - 증거 필요시 확보
-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역할

-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 신고자, 피해아동, 가해의심자, 사안 관련 비밀엄수
- ▶ 관련 자료의 제공
 -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필수 면담자 협조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학교장과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교육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 마련

역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1) 응급조치

-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 (일시보호조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
- ▶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학대행위자

(1) 긴급임시조치

- ▶ 경찰 실시
-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2) 임시조치

경찰신청→검사청구 →판사결정

-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 ▶ 친권 권한 행사 제한·정지
- ▶ 상담 및 교육 위탁
- ▶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사법처리

피해아동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 ▶ 퇴거 등 격리
- ▶ 접근 금지
-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학대행위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경찰	검찰	법원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수사 후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아동보호 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

사례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상담 및 의료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위탁 등)
-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역할

피해아동 학적처리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비밀전학(필요시, 학적 변경 없는 등교학습 임시 지원)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관련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제3항

-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역할

- ▶ 아동을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 재학대 발생 시 112 신고
- ▶ 피해아동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보고



교사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학교·교육청)**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즉시 신고
 -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 응급상황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사안보고 <서식2> <서식2-1>

현장출동 및 사안 조사



①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학대(의심)발생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 사안 조사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학교 등)에 출입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나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

※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지자체)과 혐의 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조사완료 및 사례판단 후 해당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집단시설명, 사례판단근거 및 결과 등)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후 개입 방향을 협의함



- (학교·교육청)** 아동학대 사안 조사(상담)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적극 협조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미상의 성인 집단 방문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함
-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생의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 또는 상담교사가 동석할 수 있음(단, 진술 개입 금지)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

(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의2



GOOD

피해아동 조사 시 교사의 협조가 잘 된 사례

-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되는 내용으로 교사에 의해 112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교로 현장출동함. 심각한 물리적 방임으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사자가 분리 보호에 대한 의사를 수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완강히 거부함. 이에 아동과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의 동석 하에 협조를 통해 아동이 최종 분리 보호에 동의하여 학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아동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라도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학교 상담을 통하여 학대피해사실이 인지되었고 피해아동 등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등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응급조치 실시 가능

※ 제2호~제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호. 「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4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호. 성폭력·아동학대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 제3호~제6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조치 가능

●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하는 조치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판사)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호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실효적인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 제1호~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
-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 행위자 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각 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아동학대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호~제3호까지 긴급임시조치 가능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 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 (경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학대 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

- 불기소 결정: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 아동보호사건 송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 공소제기(기소):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벌금 등)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① 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 비밀 전학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학생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전학을 요청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비밀전학 협조

- 아동학대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함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함

- 학교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음

● 학교급에 따른 비밀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초등학교의 장은 학대의 피해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할 수 있음

※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 또는 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취지는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이며, 초등학교 전학 시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가 아님. 따라서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며,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들어 거절하도록 함

- 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허가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함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체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 비밀전학 지원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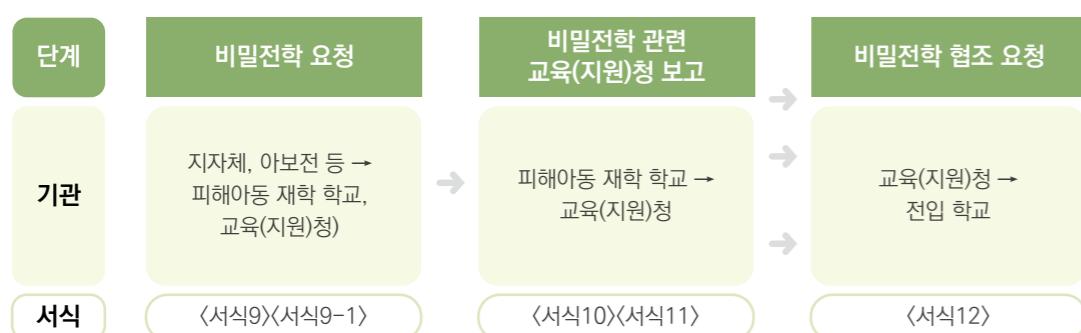
- 학교 및 교육청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해야 함
- 학교 관계자들의 실수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 학교 및 교육청은 교육복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밀전학 대상 아동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함
* 필요한 경우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학습 경비 등 지원
- 비밀전학 나이스 처리 시 유의점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비밀전학 시 피해학생 신상정보 노출 사례

- 비밀전학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서 외에 추가자료(친권자(가해자) 등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정보가 노출된 사례 (관련법 및 학생부 지침상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 비밀전학 후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자, 방과후학교 수혜자로 가해자인 아버지의 연락처가 나이스 상에 기재되어 있어, 나이스에서 SMS 전송으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사례
- 자녀가 다녔던 전 학교를 찾아가 보호자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내고 난 후, 비밀전학 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호자임을 증명하며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아낸 사례

◎ 비밀전학 절차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 〈서식3〉, 〈서식4〉 참고)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
-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 부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등) 2. 결석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기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교학습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학적은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 지원을 위한 것이며, 지속적·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 지자체의 장 / 교육감(교육장)
- 피신청권자의 역할 :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 지정된 학교의 역할 :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 등교학습지원 절차

지자체 장의 교육감(장)에 대한 등교학습지원 요청

- (사유) ①아동학대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②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등의 의견 제출, ③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 ① ~ ③ 중 어떤 경우에도 학대피해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 (신청권자) 지자체 장
- (피신청권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지원 기간) 권장 지원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0이내임. 단,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라 권장 기간을 초과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음(최초 등교학습지원 신청의 절차를 준용) <서식6><서식7><서식8>



교육감(장)의 학습지원 학교 지정

- 교육감(장)은 피해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학교를 지정

※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지원 학교를 지정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 학습지원 학교는 피해아동의 교육활동을 지원
- 등교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는 최초 등교학습지원 중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0이 도과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지자체에 그 사실을 공유
※ 단,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원적교에 송부하는 즉시 폐기해야 함



등교학습 지원 종료 후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원적교에 송부

- 교육지원이 종료되어 피해학생이 원적교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학습지원을 제공한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제공
※ 단,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원적교에 송부하는 즉시 폐기해야 함
- <서식5>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활용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 등교학습이 지원되는 기간 중 해당 학생의 출결은 지자체 위탁학생 관리로서 원적교 출석으로 인정
- 원적교 학업 평가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청)과 학업성적관리규정(학교)에 따라 인정점 부여. 원적교는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 관련 내용을 위탁학생과 원적교에 제공

참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 참조)

▪ 등교학습 지원 시 유의사항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지원청은 피해아동이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활동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적교 및 등교학습 지원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이 학습지원 제공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관찰 등의 심리적 지원방안 협의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시 등교학습지원 관련 기록 등에 아동의 소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위탁 보호 (지자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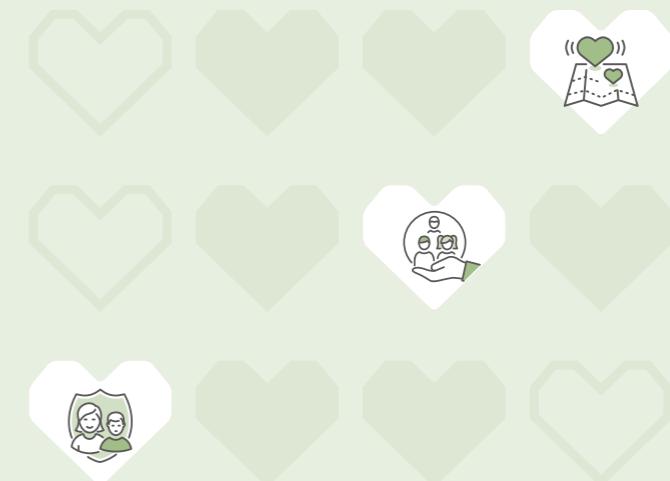
▪ 병원학교 및 쉼터(학대아동쉼터, 청소년쉼터 등)를 통한 학습 지원

※ 아동학대 위탁 보호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보호기관(지자체)에서 학습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음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VI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정보연계협의체

◎ 정보연계협의체 필요성

- 아동학대 조기발견, 초동대응, 행위자 수사, 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 등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 정보연계협의체 기능 및 역할

- (중요안건) 복지부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방안 마련
- (일반안건)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아동 정보 공유, 다양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학대 개별 사례, 기관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을 논의
- (참여) 시군구,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위기의심 아동(e아동) 관련 특이·건의사항 등 필요시 읍면동 e아동 담당자 참석

※ 학교 내 정보 공유 필요시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 등) 참석

※ 기타 자문 등이 필요할 시 학계 및 지역 전문가 참석

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회의 목적

-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례판단이 어려운 경우 및 현장조치 후 아동의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례판단 및 아동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통합사례회의 운영

◎ 통합사례회의 기능 및 역할

- 신체적·정서적학대, 방임 등 학대피해 의심사례 등에 관련된 사항 논의
- 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 등 관련 사항 논의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방향 등에 관련 사항 논의 등

◎ 통합사례회의 설치 및 구성

설치 주체	• 시·군·구별로 설치 및 운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참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 (그 외 전문가)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학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추가 • (전문가 자문체계)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 구축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참고 통합사례회의 운영

- 학대피해아동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방안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이 가능. 통합사례회의에는 기관별 역할분장, 메인 사례관리기관 선정, 사례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진행계획 논의, 사례 진행사항 공유 등 진행. 통합사례회의는 어떤 기관이든 주최 가능하며 사례와 연관된 기관이면 누구나 초대 가능(개최 요청한 곳에서 자료준비 등 행정절차 수행)
-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예방·신고·조사·조치·사례관리' 단계별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안전 확보,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유의사항

- 통합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시 현재 피해아동의 상황,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등 각 기관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단, 피해학생과 충분한 대화 및 설명을 제공하는 등 회복과 안정,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17개 시도별 아동학대 지원 및 유관기관은 운영이 상이할 수 있고, 관련 기관 정보는 시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 피해아동 맞춤형 통합지원 적용 사례



- 남매(11세, 13세)가 친부로부터 지속적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피해로 신고된 사례
- 친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친부의 학대를 방관함. 담임교사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반복된 상처를 관찰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면담한 결과 친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시설에 버리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파악함
- 교사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후 112에 아동학대 신고함

STEP 1. 안전 및 보호 지원



- 학교의 피해아동 보호 및 조사 협조
-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등

STEP 2.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클래스/센터 상담지원
- 청소년상담/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STEP 3. 교육 지원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등교학습 및 비밀전학지원
- 멘토링 및 학습지원 등

STEP 4. 재학대방지 지원



- 피해아동 관찰 및 의심상황 모니터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정보 공유
- 재학대 예방 위한 교육지원 등

STEP 5. 기타 지원



- 가족지원/의료지원
- 법률지원(진술조력인제도 등)



◎ 안전 및 보호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후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전까지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으며 안전 확보 조사 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장소를 협조하고 피해학생의 욕구에 따라 조사 시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안정적인 환경 지원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아동에게 관찰되었던 학대피해 징후 등 관련 정보 및 상처 사진 등 정보 제공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이후 자체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을 통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 필요사항을 검토 및 지원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으로 방관하는 친모 및 학대행위자인 친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을 통해 일시보호조치 가능
학대 피해아동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지원 피해아동이 머무는 동안 생활, 교육, 정서지원 등을 하며 필요시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연계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Wee)클래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심리상담 지원 아동이 위(Wee)클래스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 위(Wee)센터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진단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담당교사,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Wee)닥터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상담 및 자문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아동 대상 내방 및 방문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이 있는 친모에게 약물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일상회복(교육)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이 쉼터 입소 및 상담·치료 등을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방과후 교육 및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행위자인 친부,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쉼터) 주변의 학교로 비밀전학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멘토링, 교육, 돌봄, 지역사회 지원 등 연계

◎ 재학대방지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행위자 조치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피해아동 대상 지속적 관찰을 통해 학대 의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예방문화 강화 및 교육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으로 피해아동 및 친모 및 친부 대상 상담,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진행 원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조력 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여부 및 지속적 보호방안 마련

◎ 기타지원

기관	지원내용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우울증이 있는 친모의 치료지원 및 양육기술강화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역 전담의료기관 및 연계 병원을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지원 신속한 아동학대 판단 조력 (소견서 및 진단서)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조력인제도 : 학대피해아동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필요시 변호사 연계를 통한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상담 연계 민·형사 등 소송 진행시 법률구조 및 변호, 소송대리 관련 정보 제공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 자체 및 경찰

기관	지원내용
지자체	<p>◆ (아동학대전담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p>◆ (아동보호전담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 상황점검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기관	지원내용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 위기아동 명단 관리 등 • 위(Wee)센터 /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 병원형 위(Wee)센터 / 위(Wee)닥터 운영 및 상담 지원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교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영상 자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피해아동 현황 파악 : 일상 관찰 및 징후발견 • 위(Wee)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학적 관련 처리 지원 • 사후관리

◎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기관	지원내용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장애인 포함)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지원내용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지원내용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비공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 긴급보호, 상담, 치료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상담 및 의료기관

기관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해바라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광역/지역전담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신속 학대 판단(소견서/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

◎ 법률관련기관 및 제도

기관	지원내용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요청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참고 진술조력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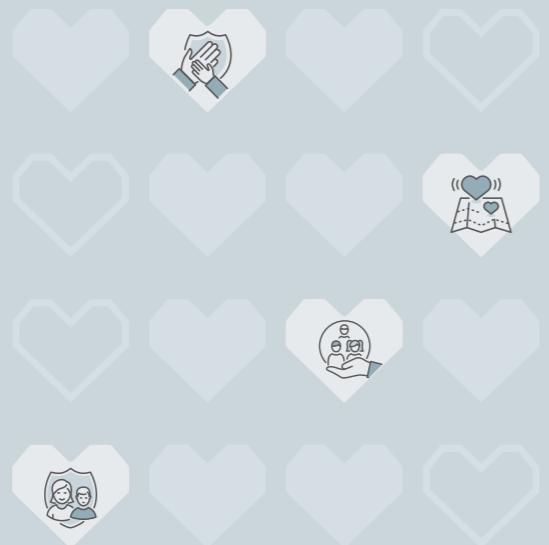
-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임.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함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폭넓게 지원됨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함. 단,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VIII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 -유치원편



1.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3. 피해아동(유아)과 대화하기
4. 아동학대 신고
5. 아동학대 사안처리
6. 신고의무자 교육
7. 아동학대 대응시 외부기관의 역할
8. 아동학대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유치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 유치원은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유치원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유치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유치원 편'은 유치원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전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아동인권이란

-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범죄 정의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 할퀴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를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심한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간헐증, 간열상, 심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
-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 성병 감염 및 임신
- ❖ 잦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 ❖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 ❖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 ❖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품행장애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유치원의 역할



평상시 관리·대응

- 유아의 건강과 안전 확인
-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
- 유아,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미인정 결석 유아 및 퇴학 유아 관리 강화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징후발견

- 아동학대 징후 파악을 통한 신고 여부 판단
- 유아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전문가 * 협조 의뢰
 - * 장애아동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등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유치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유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응급상황시

-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확보 및 보호
-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현장조사

- (경찰, 지자체) 조사 시 유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치원 내 독립된 장소 마련
 - * 필요한 경우 유아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
- (경찰, 지자체) 조사 시 필요한 관련 자료(기관 현황, 유아·직원 명단, 피해유아 인적사항 확인 등) 요청 협조
-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 등) 조사 협조



조치결정

- 피해유아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유아 상태 확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사후관리

- 피해유아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유아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 피해유아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정 방문 등)가 어려울 시 피해아동의 안전점검 또는 일상생활 모니터링 협조할 수 있음
-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피해유아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 유관기관과의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 위한 협력 등



교육(지원)청의 역할



평상시

-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사안발생 시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 장애아동 대상 학대 사안 발생 시 '장애인권지원단'과 공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관련 적극 협조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제공 등)
 - * 자료제공의 예시 : 기관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제공 등
-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사후관리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자퇴·퇴학 아동(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유형	학부모가 할 일	유치원에서 할 일
명확한 사유로 자퇴신청 시 (이사, 기관이동, 질병 등)	명확한 사유가 포함된 자퇴 신청서를 유치원으로 제출 <유치원 서식 5>	자퇴신청서에 명확한 사유 확인 후 퇴학 처리 완료 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지원 시스템)에 퇴학 등록
명확한 사유없이 자퇴신청 시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유아)를 동반하여 자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동(유아) 동반을 요청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유아와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 양육수당 대상임을 안내하고 퇴학 처리

- 입학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 자퇴 :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퇴학 :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출석인정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피해 유아가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유치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미인정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의 결석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2)



3. 피해아동(유아)과 대화하기



피해아동(유아)과 대화하기

- 피해아동(유아)과의 면담은 인지적 발달 특성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필요
- 아동(유아)을 어떻게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긍정적 자원을 찾아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참고 교사가 유의해야 할 유아의 발달적 특성

- ❖ 상황 판단이 자기중심적이다.
- ❖ 현상학적인 사고를 한다.
- ❖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적다.
- ❖ 면담에 대한 동기가 적다.
- ❖ 대화가 중심이 되는 면담을 지속하기 어렵다.
- ❖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 ❖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참고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특성

- ❖ 발달지연: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음
- ❖ 섭식행동문제: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
- ❖ 진정행동: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굽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진정행동을 보이기도 함
- ❖ 정서문제: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우울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음
-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 공격성: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 이전에 잘 해냈던 경험 등에 대해 탐색하고 강화하는 접근이 도움 됨. 이러한 대화는 아동(유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기인식을 갖게 함.

“ ”

"무엇을 좋아하나요?" /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요?"
 "무엇이 재미있습니까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은 뭔가요? 가기 싫은 누가 재미 좋은가요? 왜 좋은가요?"

“ ”

◎ 현재 상황에 대한 지각 탐색하기

“ ”

"유치원에서는 무엇이 재미 좋은가요/재미있나요?"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속상한 게 있나요?"
 "집에서는 엉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동생)랑 어떻게 지내나요?"
 "엉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동생)랑 무엇을 할 때가 재미 좋나요?"
 "그러면 그때 000이는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엉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동생)랑 무엇을 할 때 재미 속상하나요?"
 "그러면 그때 000이는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 ”

◎ 과거와 현재 상황에서 도움 되는 것 알아보기

“ ”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좋아지거나 되었나요?"
 "그때처럼 좋아지려면 누가 있어야 하나요?"
 "지금 누구랑 있는�이 재미 좋은가요?"

“ ”

◎ 아동(유아)와의 대화를 돋는 다양한 매체 활용

• 인형이나 손인형 이용하기

- 인형은 평상시 많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하여 말하는데 도움 됨. 교사는 아동(유아)과 함께 손인형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 ”

"여기 있는 인형(사람·인형, 동물·인형 등)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동물)는 요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가요?"
 "이 아이(동물)는 힘들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나요?"

“ ”

• 감정카드를 사용하여 대화하기

- 다양한 감정이 그림으로 표현된 감정카드를 활용하면 아동(유아)의 마음 상태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음. 언어적인 표현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 그림으로만 표현된 감정들은 언어로 쓰여진 단어에 의해 생각을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의 감정들을 골라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여기 있는 카드가 표정들이 있는데, 지금 000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골라서 보여줄 수 있나요?"
 "왜 이 카드를 골랐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 카드의 그림과 000이의 마음이 어떻게 같은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나요?"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좋겠나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다양한 놀잇감으로 마음 상태와 변화를 탐색하기

- 실로폰, 풍선 등 다양하게 이용하여 현재 상태와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음

“

[실로폰인 경우]

- "여기 아는데 도가 마음이 편한 것이고, 여기 높은 도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전에는 000이었는데 지금은 아파요?"
 "무엇 때문에 아파요?"
 "마음이 아파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아파요?"

”

“

[풍선인 경우]

- "풍선이 이렇게 작게 불어진 것과 마음이 편한 것과, 이렇게 크게 불어진 것과 마음은 너무 아파요. 예전에는 000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만큼 아파요?"
 "무엇 때문에 이만큼 아파요?"
 "마음이 풍선 어느 크기의 풍선만큼이길 바라나요?"

”

참고 아동(유아)과 대화 시 유의점

- 안심시키기 : 아동(유아)가 부모(교사)에게 학대상황을 이야기해도 벌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 질문은 간단히 : 아동(유아)은 보통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적으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재차 질문하여 기억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함

4.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아동학대 최초 인지

수사기관(112) 신고 / 유치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유치원 또는 유치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 요청사항을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유아의 안전 및 보호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 유치원 차원의 보호 방안 강구
※ 응급상황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유아를 분리하는 것이 우선
 - 유치원장에게 보고,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 피해유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및 사안보고 <서식4>, <서식4-1>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유아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는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 조사 시 피해유아가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동석 가능(단, 진술 개입 금지)
- ▼

•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 조치 : 피해유아에 대한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유아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수시 보고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모바일 앱 : 아이지김콜앱(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 유치원 또는 유치원장 명의로 신고 가능



참고 신고 전화 (예시)

00유치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00유치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합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아동의 인적 상황은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그 외 당부사항은입니다.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 등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에 대하여 요청사항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피해아동에 대한 비밀 보호

-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3항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 이후 응급상황 시에는 아동의 안전 및 보호에 최우선을 다해야 함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 유치원 차원의 보호방안 강구하고, 유치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유치원 서식 4〉 〈유치원 서식 4-1〉 참고)를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함
- 보고 과정 중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아동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출동하도록 요청
- 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현장조사 전 피해아동에게 계속 캐물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5. 아동학대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절차

신고 접수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모바일 앱 : 아이지김콜 앱(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



조사

-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 자자체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 판단
- ▶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례판단 결과 통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유치원의 역할

역할

-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 강구
 - 증거 필요시 확보
- ▶ 유치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역할

-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 관련 자료의 제공
-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유치원장과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역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1) 응급조치

-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 (일시보호조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
 - ▶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사법처리

피해아동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 ▶ 퇴거 등 격리
- ▶ 접근 금지
-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학대행위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경찰	검찰	법원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수사 후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아동보호 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

사례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상담 및 의료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위탁 등)
-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역할

피해아동 학적처리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비밀전학(필요시, 학적 변경 없는 등교학습 임시 지원)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관련 유치원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제3항

-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역할

- ▶ 아동을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 재학대 발생 시 112 신고
- ▶ 피해아동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 피해유아의 출석 처리

- 피해유아가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유치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참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8조(출결상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신고의무자 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개요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및 위탁·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집합, 대면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 유치원 및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교육연수원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검색 '아동학대' 검색 / 메뉴 - 법정의무교육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아동학대' 검색 / 메뉴 - 온라인학습 의무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

7. 아동학대 대응시 외부기관의 역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지자체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분부)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 · 치료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 · 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비공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 긴급보호, 상담, 치료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해바라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대한법률 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건강가정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지역전담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 신속 학대판단(소견서/진단서)

◎ 아동학대 사례로 보는 기관별 역할



7세 아동이 신체학대로 판단된 사례

- 아동이 유치원 등원 후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식사를 거부함. 평소와 다르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남자 성인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 교사가 아동과 면담을 한 결과 계모로부터 지속적 신체학대를 당한 사실을 파악함
- 교사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발견하여 사진을 찍은 후 112에 신고함

▪ 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전 피해아동 보호 - 조사 진행 시 피해아동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장소 협조 - 평소 아동 관찰 정보 및 학대 관련 사진 등 정보제공 - 학대 의심상황 수시 모니터링 지원 및 정기적 공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시 해당 유치원 운영 관련 서류 및 전수조사 진행 등 협조 - 신고 이후 지자체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을 통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 필요사항 검토 및 지원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신고접수, 정보공유, 현장조사 진행 - 유관기관·학교 등 협동,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출동,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진행 -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협력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원가정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가정복귀 절차 진행 - 가정복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8. 아동학대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유치원 서식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보고 시 유의사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병설유치원 겸임 관리자는 제외하고 유치원 인력으로 전체 교직원 수 입력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처리(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 시설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근거
 -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 학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시설장 (기관장) 성명	홍길동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서울 종로구	시설장 (기관장) 성명	홍길동
교육일시	ex) 2022.5.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small>*2022.12.31. 기준</small>	100명	교육 수료인원	80명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정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교육(체계) 운영 기관 명		답재 사이트 주소	www.edu.or.kr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 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정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정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정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 요건 기준 설정 가능
-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 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유치원 서식2

아동학대 사안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유치원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유아 생활 관련 사안보고

- 1234(2000.00.00)호의 관련입니다.
- 현재 본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아동 인적사항(생략가능)

유치원명	반	성명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고
			관계	성명		
○○유치원	○반	○○○	부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 (불임1)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참고

불임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1부. 끝.

○ ○ 유치원장

담당 ○○○

부장 ○○○

원감 ○○○

원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전송

/E-mail

/비공개(6)

/

유치원 서식2-1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예시)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보고부 최초 최종

○○유치원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기타
체크(○)					

<증복체크 가능>

담임	성명:	부장	성명:	원감	성명:	원장	성명:
	H·P:	(책임교사)	H·P:	H·P:	H·P:	H·P:	

피해 유아	()반 성명 : ()
발생 일시	2000.00.00.~2000.00.00.(00회)
접수 일시	2000.00.00.
보고 일시	2000.00.00.
최초 일시	2000.00.00.
최종 일시	2000.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
---------------	-------------------

특이사항	※ 재학대여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아동	피해유아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중	2000.00.00.	○○경찰서 등

 향후 계획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등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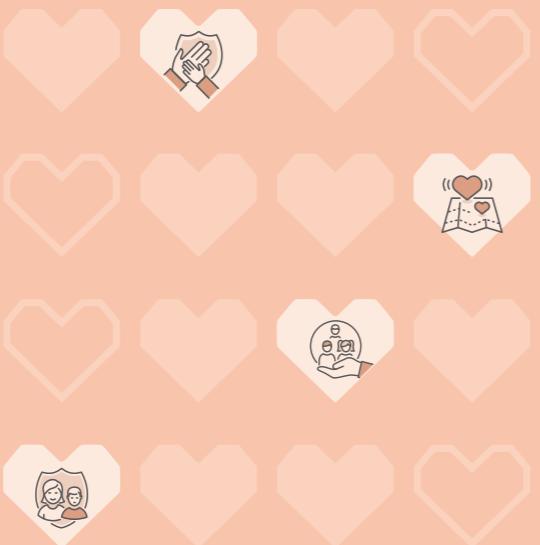


IX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Q&A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

Q1 큰 부부싸움이 지속되는 등 아이가 긴장감과 위협감을 계속 느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지속되고 심각한 부부싸움을 노출하여 아동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정서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Q3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경우 아동학대인가요? 학교폭력인가요?

A

학교폭력입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4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하굣길에 신원 미상의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일반 폭행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A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과 「형법」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Q1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생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웃집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2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항도 신고사항인가요?

A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및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Q3 신고의무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나요?

A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의 사안처리가 진행됩니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과는 구별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학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은 확보되는지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자 등이 직접 주거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7

학교 지역의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타 관할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해당 관할지역에 이관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즉각 출동합니다.

Q8

아동학대피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신고접수 시 만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합니다. 신고접수 시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라도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대피해는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것으로 아동학대 수사는 계속되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의 도움을 주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사건개입을 원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9**Q9**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누군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된 경우) 이때는 해당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인 경우) 또는 업무방해죄(사립학교의 경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Q10**Q10**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학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학교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Q11**Q11**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을 공유받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A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은 미처 드러나지 않은 학대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곧 학대 의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단을 공유받았다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된 아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중에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안처리

Q1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교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나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의 사실 은폐·진술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평소 관찰되고 인지되었던 모습이나 태도 등을 통해 발생 요인, 위험 수준 등을 물기 위해 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A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과 수사기관(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Q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른가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아동학대 혐의 유무를 밝히고 학대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의 일환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참고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Q4 사법기관의 판단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나요?

A 사법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범죄 혐의 존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지자체는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발견으로 보호조치하며, 학대 후유증 최소화·가족기능 회복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하더라도 사법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참고인인 교사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석이 부담스러우면 직접 출석 대신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조사,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모와 학생이 부의 지속적 학대로 비밀전학을 원합니다. 양측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보호자의 동의는 학대행위자인 부를 제외한 모의 동의만 받아도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비밀전학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 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학대 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들어 거절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통신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7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도 학대피해의 심으로 상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Q8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출석인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출결상황] 참고

Q9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했던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아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귀가 즉 원가정 복귀는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변경(가정복귀) 시, 가정복귀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우려 및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 아동의 욕구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귀가를 강하게 거부하면 아동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보호시설에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각 분리하였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는 가정복귀를 진행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에도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보호처분 여부와 연계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Q10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나요?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학교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고). 이외에도 징계절차에 따라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파면, 해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준)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2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대상 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2023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Q4 A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기관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교육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2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Q6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X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부 록



- 각종 양식 (예시)
- 유관기관 리스트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1. 각종 양식 (예시)



아동학대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서식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보고 시 유의사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처리(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OO학교(유·초·중·고)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일시	00도 00시 2000. 00. 00	기관장 성명	교육장소	2층 협의실 등
전체 교직원수 (교장 또는 원장 각각 포함)	0명	이수 인원수	0명	집합 인원수 사이버연수 인원수	0명 0명
이수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증빙자료〉

사진(파일크기 줄여서 삽입)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인터넷강의) 교육수료증 첨부 또는 이수확인서 서식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터넷강의 명단]

순번	학교명	성명	직위	인터넷강의 사이트	교육일시	이수(수료)증번호
1	00초	김아동	교사	중앙교육연수원	2000.5.1.~6.1	
2						

서식02

아동학대 사안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 ○ 학교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학생 생활 관련 사안보고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학생 인적사항(생략가능)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고
학교명	학년 반	성명	관계	성명	
○○학교	○학년○반	○○○	부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 (불임)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참고

불임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1부. 끝.

○ ○ 학교장

담당 ○○○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 화

부장 ○○○

교감 ○○○

교장○○○

접 수 (. . .)

/전송

/E-mail

/ /비공개(6)

서식02-1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예시)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복
구
분

□최초

□최종

○○학교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기타
체크(○)					

<중복체크 가능>

담임	성명: H·P:	부장	성명: (책임교사) H·P:	교감	성명: H·P:	교장	성명: H·P:
----	-------------	----	-----------------------	----	-------------	----	-------------

피해 학생 발생 일시 접수 일시	()학년 ()반 ()번 성명 : () 2000.00.00.~2000.00.00.(00회) 2000.00.00.	보고 일시	최초 일시	2000.00.00. 2000.00.00.
-------------------------	---	-------	-------	----------------------------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
---------------------	-------------------

특이사항	※ 재학대여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중	2000.00.00.	○○경찰서 등

□ 향후 계획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추진 등

서식03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예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 기관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요청

(※ 원제목 내용 : 학생 출석 인정 협조 요청 건)

-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귀 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 학생명 : ○○○ (○○년 ○○월 ○○일생)
 나. 보호기관명 : 피해아동쉼터(○○도 ○○시 소재)
 다. 쉼터 입소일 : 20○○년 ○월 ○일
 라. 결석일 : 20○○년 ○월 ○일 ~ 아동 출석 시 까지
 마. 결석사유 :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바. 요청사항 : 아동 출석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사. 출석인정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아.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무관 ○○○

담당 ○○○

과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 화

/전송

접 수 (. . .)

/E-mail

/비공개(6)

서식04

출석 인정 협조 요청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계획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해당 학생의 출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가. 아동명 : ○○○ (○○년 ○○월 ○○일생)
 나. 보호기관명 : 피해아동전용쉼터(○○도 ○○시 소재)
 다. 쉼터 입소일 : 20○○년 ○월 ○일
 라. 기간 : 20○○년 ○월 ○일 ~ 학생 출석 시 까지
 마. 결석사유 :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바. 유의사항 : 아동 출결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사. 출결인정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붙임 ○○○○○○ 요청공문 1부. 끝.

○○○ 학교장

담 당 ○○○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 화

부장 ○○○

교감 ○○○

교장 ○○○

접 수 (. . .)

/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05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등교학습지원교→원적교]

(등교학습 지원학교 → 피해학생 원적교

학교명 ○○학교 작성자 교사 ○○○ 연락처

1. 인적 사항

학생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재적교	○○학교 ○학년 ○반 ○○번		
	주소			

2. 출결 사항

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생활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4. 교과학습발달상황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00. 00. 00
○○○○장 (직인)

서식06

등교학습 신청서 (학생 작성→지자체 신청용)

등교학습 신청서

주 소			
현 재 적 교		학 년	<input type="radio"/> 학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20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신청 사유(예시)

본인은 ○○지역의 조부모집(또는 ○○쉼터)에서 머무르며 인근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므로,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일

신청자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07

의견 제출서 (학교·아보전·시설 등→지자체 제출용)

서식08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

등교학습 지원 의견 제출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 견 제출인	성 명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 제출 사유(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등교학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서 (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 학생의 등교학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장(직인)				
○○교육감(장) 귀하				

서식09

비밀전학 요청 공문(예시)

비밀전학 요청(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도 공문 동시 시행

○○기관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 원제목 내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건)

-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따라 귀교의 아동학대피해 학생에 대해 비밀전학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교	○학년 ○반	○○○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보호	OO도 OO시 OO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임 1. (필요시) 상담소견서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주무관 ○○○

담당 ○○○

과장 ○○○

(시·군·구의 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 /비공개(6)

우
전 화

/전송

/E-mail

서식09-1

비밀전학 요청서(예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신고접수일	년 월 일
학 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유기 및 방임
취 학 요 청 사 항	<input type="checkbox"/> 주소지 외 비밀전학 <input type="checkbox"/> 주소지 내 비밀전학
아 동 정 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학년, 반)
학 대 행 위 자 정 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기관명(주소)
요 청 기 관 정 보	담당 공무원
	연락처
	• 학대피해 사항
	- - -
사 례 개 요	• 비밀전학 요청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상기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서식10

비밀전학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보고

(※ 원제목 내용: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4항(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00도 00시 00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 학교장

담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화 /전송 접 수 (. . .) /
 /비공개(6)

서식11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 ○ 학교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 원제목 내용: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4항(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00도 00시 00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 학교장

담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화 /전송 접 수 (. . .) /
 /비공개(6)

서식12

비밀전학 요청 교육(지원청) 공문 (예시)

(교육(지원)청→피해아동이 전입할 학교)

○ ○ 교육(지원)청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전입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 원제목 내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건)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에서는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 다음의 아동을 귀교로 비밀전학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재학중인 학교 | 학년 반 | 성명 | 전학일자 | 전학사유 | 비고 |
|-----------------|-------|-----|----------|---------------------|--|
| OO도 OO시
OO학교 | ○학년○반 | ○○○ | 20○○.○.○ |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4.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필요시) 상담소견서 1부. 끝.

○ ○ 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

협조자

시 행 ○○○(20 . . .)

우

전 화

과장 ○○○

교육장 ○○○

접 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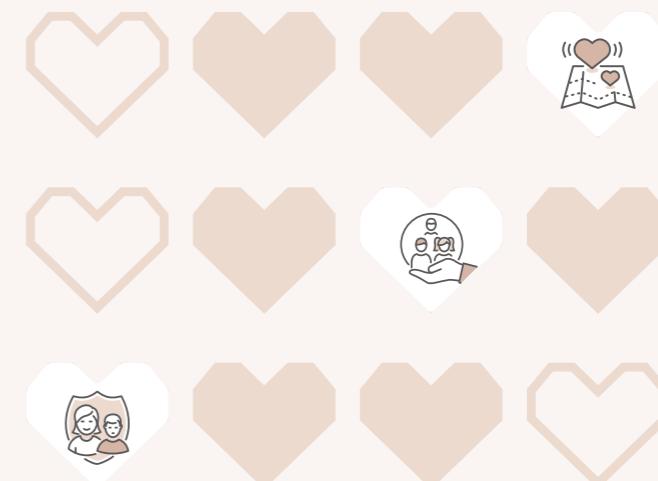
/전송

/E-mail

/
/비공개(6)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2. 유관기관 리스트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098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종량구	02-2210-041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2221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2165-219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도봉구	02-3499-681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용산구, 종로구, 종구	02-708-669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동구, 송파구	02-3434-445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서구, 양천구	02-2600-081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남구, 서초구	02-3015-347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작구, 관악구	02-810-1717	
부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광진구, 성동구	02-2286-377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성북구	02-944-947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부산광역시	051-860-0394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52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1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5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16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1251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1215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대구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47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25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62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35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503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280	유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2	특수학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2-006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053-232-0071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2-002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053-233-006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3-0052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53-233-002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4-0054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053-234-0049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4-0026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053-235-003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센터	초, 중학교	053-235-005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고등·특수 ·각종· 기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386	특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627-12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032-510-5431	유치원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광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부평구	032-510-1594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유치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55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25	유치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유치원
	인천광역시 강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26	초·중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382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초등학교	062-605-5572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중·고등학교	062-605-5571	
대전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초등학교	062-600-966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중학교	062-600-966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고등학교	062-600-9661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대전광역시	042-616-8287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5	
울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62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3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7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276	
세종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초등학교	052-219-5623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중학교	052-219-5652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초등학교	052-228-6632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중학교	052-228-6661	
경기도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044-320-2416	예방 교육
	학생화해중재원		-	044-903-1559	사안 관련
	전입학원스톱지원센터		-	044-320-2163	전입학 관련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경기도	031-820-0792	예방교육 시안(초·중·고)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고양시	031-900-4694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성장지원팀	광명시	02-2610-05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 학교생활지원센터	광주시, 하남시	031-280-71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군포시, 의왕시	031-390-1140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김포시	031-980-123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340~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437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부천시	032-620-0343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성남시	031-780-2607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시	031-289-6921	초·중등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수원시	031-250-1417	유치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54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양시, 과천시	031-380-7221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팀	양평군	031-770-5640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여주시	031-880-2345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안전팀	연천군	031-839-0160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용인시	031-8020-9137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265	초등
				031-820-0090	중등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이천시	031-639-5618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파주시	031-948-429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32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포천시	031-539-014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30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시흥시	031-488-4553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강원도	033-258-5503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춘천	033-259-1645	
	원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원주	033-760-5664	
	강릉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강릉	033-640-124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양양	033-639-6050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	033-530-3044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	033-580-5591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	033-570-5149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	033-430-1122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	033-370-1160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	033-330-1774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	033-560-8170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	033-452-1007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	033-440-1590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	033-480-1472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	033-460-1070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	033-680-603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	충청북도	043-290-2773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 생활교육팀	청주시	043-270-5863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충주시	043-850-0571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제천시	043-640-6810	
	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보은군	043-540-5559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옥천군	043-730-4380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영동군	043-740-7761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진천군	043-530-5368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5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음성군	043-871-5031	
	단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단양군	043-420-6126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충남	충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충남	041-640-743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체육인성건강과	천안시	041-529-0597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6370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아산시	041-539-2451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사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1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라북도	063-239-3461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전주시	063-270-6110	
				063-270-6118	
				063-270-6100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군산시	063-450-2679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익산시	063-850-8857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88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원시	063-620-7831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제시	063-540-258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군	063-270-7627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안군	063-430-6214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무주군	063-320-5134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수군	063-350-5220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임실군	063-640-3510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순창군	063-650-6190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창군	063-560-1680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부안군	063-580-7431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전라남도	061-260-0953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목포	061-280-6464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	061-690-0825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순천	061-729-7832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나주	061-330-0195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광양	061-760-3363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양	061-380-8190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곡성	061-360-6657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례	061-780-6691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고흥	061-830-2057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성	061-850-6410	
전남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화순	061-370-7167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흥	061-860-1237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강진	061-430-1547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해남	061-530-1137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암	061-470-4201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무안	061-450-7117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함평	061-320-6616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광	061-350-6616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장성	061-390-6112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완도	061-550-0581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도	061-540-5136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신안	061-240-3691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	054-805-3507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22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054-288-6748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경주시	054-740-9157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김천시	054-420-526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13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22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구미시	054-440-2322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주시	054-630-4205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천시	054-330-2323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상주시	054-530-2364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06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15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경산시	053-810-7513	
		교육지원과	경북 경산시	053-810-7526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군위군	054-380-8221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40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3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21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양군	054-680-2250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덕군	054-730-8012	
		교육지원과	경북 영덕군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21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고령군	054-950-252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성주군	054-930-2061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16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21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예천군	054-650-2650 054-650-2551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봉화군	054-679-174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진군	054-780-3324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릉군	054-790-3046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경남	055-210-5176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고성	055-670-8150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의령	055-570-711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거제	055-630-9231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양	055-960-2730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양산	055-379-3181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거창	055-940-6125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산청	055-970-3051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합천	055-930-7005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하동	055-880-1931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사천	055-830-1711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진주	055-740-2156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창원	055-210-0391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해	055-860-4120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창녕	055-530-3577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함안	055-580-8030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밀양	055-350-1555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	055-650-8055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김해	055-330-96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도 고등, 특수학교	064-710-045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시 초중학교	064-754-13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서귀포시 초중학교	064-730-8154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유아)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009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21~3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552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2165-0232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노원구, 도봉구	02-3499-6822~3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708-652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동구, 송파구	02-3434-432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서구, 양천구	02-2600-082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남구, 서초구	02-3015-3321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동작구, 관악구	02-810-8322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광진구, 성동구	02-2286-362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북구, 성북구	02-9449-3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부산광역시	051-860-028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051-250-042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051-640-0222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강서구, 북구, 사상구	051-330-1222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051-550-0131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42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대구 전지역	053-231-0254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동부	053-232-0060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서부	053-233-0061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부	053-234-0054	
	달성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달성	053-235-0033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032-510-5431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25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47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062-605-554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062-600-983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대전 전체	042-616-827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3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43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417	
세종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세종시	044-320-2113	
경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경기도 전체	031-820-0708 031-820-0713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경기도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고양시	031-900-2810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광명시	02-2610-0564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학생지원센터	광주시, 하남시	031-280-71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군포시, 의왕시	031) 390-1119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김포시	031-980-123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12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314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기획경영과	부천시	032-620-0264	
	성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성남시	031-780-2647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시	031-289-6924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27(8)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증등과 학생지원센터	안양시, 과천시	031-380-7089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양평군	031-770-5641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여주시	031-880-2345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연천군	031-839-0160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 용인시	031-8020-9225 031-8020-9226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의정부시	031-820-0022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이천시	031-645-1646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파주시	031-940-7205	
	평택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32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포천시	031-539-012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25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시흥시	031-488-4552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강원도 전역	033-258-0413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춘천시	033-259-1645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원주시	033-760-5642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	강릉시	033-640-1212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시, 양양군	033+639-6025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시	033-530-3021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시	033-580-5580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시	033-570-5142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군	033-430-1127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군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군	033-370-1141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군	033-330-1791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군	033-560-8160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군	033-450-1086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군	033-430-1561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군	033-480-1472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군	033-460-1071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군	033-680-6025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	043-290-2264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청주시	043-299-3131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충주시	043-850-0604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제천시	043-640-6651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	보은군	043-540-5552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옥천군	043-730-4221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	영동군	043-740-7711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진천군	043-530-531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2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음성군	043-871-5022	
충남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	단양군	043-420-6161	
	충남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	충청남도	041-640-7233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천안시	041-529-0556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9370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아산시	041-539-2420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서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태안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8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전라북도	063-239-3279	
	전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전주시	063-270-6126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군산시	063-450-2632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익산시	063-850-8811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32	
	남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남원시	063-620-7813	
	김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김제시	063-540-2565	
	완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완주군	063-270-7611	
	진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진안군	063-430-6211	
	무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무주군	063-320-5111	
전남	장수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장수군	063-350-5231	
	임실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임실군	063-640-3521	
	순창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순창군	063-650-6161	
	고창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고창군	063-560-1671	
	부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부안군	063-580-7422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전라남도 전역	061-260-0333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목포지역	061-280-6611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여수지역	061-690-5513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순천지역	061-729-7753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나주지역	061-330-0197	
광주광역시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광양지역	061-760-3306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담양지역	061-380-8112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곡성지역	061-363-9414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구례지역	061-780-6691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고흥지역	061-830-2055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보성지역	061-850-7130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화순지역	061-350-7615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장흥지역	061-860-1237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북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강진지역	061-430-1540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해남지역	061-530-1140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영암지역	061-470-4201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무안지역	061-450-7112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함평지역	061-320-6615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영광지역	061-350-6615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장성지역	061-390-6111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완도지역	061-550-0512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진도지역	061-540-5122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신안지역	061-240-3631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경상북도	054-805-3325	
	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31~2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주시	054-740-9152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천시	054-420-525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안동시	054-851-9215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미시	054-440-2316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주시	054-630-4206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천시	054-330-2311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상주시	054-530-2351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문경시	054-550-5512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산시	053-810-7513	
경인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군위군	054-380-8211	6월 대구시 편입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의성군	054-830-112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청송군	054-870-1112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양군	054-680-2241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덕군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청도군	054-370-1111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남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령군	054-950-251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성주군	054-930-2052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칠곡군	054-979-2118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예천군	054-650-2571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봉화군	054-679-173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울진군	054-780-3331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울릉군	054-790-3026	
	경남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경상남도	055-268-1144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고성군	055-670-8150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의령군	055-570-7130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거제시	055-630-9213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함양군	055-960-2740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아특수담당)	양산시	055-379-304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학교교육지원센터)	거창군	055-940-6125	
	산청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wee 센터)	산청군	055-970-3039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합천군	055-930-7020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하동군	055-880-1913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사천시	055-830-1512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아·초등교육담당)	진주시	055-740-2014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055-210-0353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남해군	055-860-4112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Wee센터))	창녕군	055-530-3508	
제주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함안군	055-580-8040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밀양시	055-350-1513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시	055-650-80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김해시	055-330-96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도	064-710-034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제주시	064-754-124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서귀포시	064-730-8131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특수)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특수교육과	종로구	02-399-9727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구	02-459-101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송파구	02-414-263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구	02-3665-0806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본원	구로구, 영등포구	02-861-2416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랑구	02-433-4327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동작구	02-833-2895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노원구	02-956-1038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은평구	02-715-095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성동구	02-2292-641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성북구	02-911-1078	
	중부교육지원청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2-2027-790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진구	051-605-372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1-640-0248	
	동래교육지원청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동래구	051-935-4289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1-330-126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51-250-0428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	051-709-047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달서구	053-231-395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서구	053-234-0162	
	달성교육지원청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성군	053-235-0055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53-232-0047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3-233-004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계양구	032-547-8554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03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미추홀구	032-627-127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구	032-455-4600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부평구	032-507-5059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32-568-8095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산구	062-717-680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62-605-553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62-600-963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동구	042-610-1000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대덕구	042-672-1027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42-229-1154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42-471-034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울주군	052-255-6601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2-227-6604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2-219-5790	
세종	세종시교육청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시	044-320-5100	
	경기도교육청	경기특수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783 031-820-0786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가평특수교육지원센터	가평군	031-580-5124	
	고양교육지원청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	고양시	031-912-1591	
	광명교육지원청	광명특수교육지원센터	광명시	02-2615-9654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시	031-280-726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의왕특수교육지원센터	군포시	031-455-5034	
	김포교육지원청	김포특수교육지원센터	김포시	031-980-128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남양주시	031-550-630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특수교육지원센터	양주시	031-864-0255	
	부천교육지원청	부천특수교육지원센터	부천시	070-7096-7470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성남시	031-758-4860	
	수원교육지원청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수원시	070-4486-9170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특수교육지원센터	안산시	031-414-2240	
	안성교육지원청	안성특수교육지원센터	안성시	031-8056-540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과천특수교육지원센터	안양시	031-443-6945	
	양평교육지원청	양평특수교육지원센터	양평군	031-770-5620	
	여주교육지원청	여주특수교육지원센터	여주시	031-880-2360	
	연천교육지원청	연천특수교육지원센터	연천군	031-839-0135	
	용인교육지원청	용인특수교육지원센터	용인시	031-334-7552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47-4685	
	이천교육지원청	이천특수교육지원센터	이천시	031-645-1661	
	파주교육지원청	파주특수교육지원센터	파주시	070-7777-9980	
	평택교육지원청	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평택시	031-618-0682	
	포천교육지원청	포천특수교육지원센터	포천시	031-530-013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특수교육지원센터	오산시	070-4367-6907	
	시흥교육지원청	시흥특수교육지원센터	시흥시	070-7097-1690	
	강원도교육청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시	033-258-5386	
	강릉교육지원청	강릉특수교육지원센터	강릉시	033-640-1299	
	고성교육지원청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	고성군	033-681-9620	
	동해교육지원청	동해특수교육지원센터	동해시	033-530-3012	
	삼척교육지원청	삼척특수교육지원센터	삼척시	033-570-513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양양특수교육지원센터	속초시	033-639-6032	
	양구교육지원청	양구특수교육지원센터	양구군	033-480-1455	
	영월교육지원청	영월특수교육지원센터	영월군	033-370-1114	
	원주교육지원청	원주특수교육지원센터	원주시	033-760-5720	
	인제교육지원청	인제특수교육지원센터	인제군	033-460-1083	
	정선교육지원청	정선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선군	033-560-8117	
	철원교육지원청	철원특수교육지원센터	철원군	033-450-1062	
	춘천교육지원청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시	033-259-1500	
	태백교육지원청	태백특수교육지원센터	태백시	033-580-5524	
	평창교육지원청	평창특수교육지원센터	평창군	033-330-1774	
충북	홍천교육지원청	홍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홍천군	033-430-1112	
	화천교육지원청	화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화천군	033-440-1557	
	횡성교육지원청	횡성특수교육지원센터	횡성군	033-340-0333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청주시	043-219-6100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증평특수교육지원센터	괴산군	043-830-5068	
충남	단양교육지원청	단양특수교육지원센터	단양군	043-420-6165	
	보은교육지원청	보은특수교육지원센터	보은군	043-540-5592	
	영동교육지원청	영동특수교육지원센터	영동군	043-740-7718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홍성군	041-640-7244	
충남	공주교육지원청	공주특수교육지원센터	공주시	041-850-2680	
	금산교육지원청	금산특수교육지원센터	금산군	041-750-884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계룡특수교육지원센터	논산시	041-730-9305	
	부여교육지원청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	부여군	041-835-1160	
	아산교육지원청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아산시	041-539-2457	
	예산교육지원청	예산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군	041-330-3653	
	천안교육지원청	천안특수교육지원센터	천안시	041-529-0562	
	청양교육지원청	청양특수교육지원센터	청양군	041-944-0031	
	당진교육지원청	당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당진시	041-351-2511	
	서산교육지원청	서산특수교육지원센터	서산시	041-660-0336	
	서천교육지원청	서천특수교육지원센터	서천군	041-950-6099	
	보령교육지원청	보령특수교육지원센터	보령시	041-934-0920	
	태안교육지원청	태안특수교육지원센터	태안군	041-670-8160	
	홍성교육지원청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홍성군	041-634-9943	
	전라북도교육청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	전주시	063-239-3354	
	고창교육지원청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고창군	063-560-1684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군산시	063-451-7950	
	김제교육지원청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김제시	063-540-2591	
	남원교육지원청	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	남원시	063-620-7881	
	무주교육지원청	무주특수교육지원센터	무주군	063-320-5233	
	부안교육지원청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부안군	063-580-7419	
	순창교육지원청	순창특수교육지원센터	순창군	063-653-9255	
	완주교육지원청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군	063-270-7606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의산교육지원청	의산특수교육지원센터	의산시	063-831-8681	
	임실교육지원청	임실톡수교육지원센터	임실군	063-640-3565	
	장수교육지원청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장수군	063-350-5287	
	전주교육지원청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전주시	063-276-6056	
	정읍교육지원청	정읍특수교육지원센터	정읍시	063-530-3037	
	진안교육지원청	진안특수교육지원센터	진안군	063-430-6287	
	전라남도교육청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함평군	061-320-7085	
	강진교육지원청	강진특수교육지원센터	강진군	061-430-1526	
	고흥교육지원청	고흥특수교육지원센터	고흥군	061-830-2087	
	곡성교육지원청	곡성특수교육지원센터	곡성군	061-362-0850	
	광양교육지원청	광양특수교육지원센터	광영시	061-761-3012	
	구례교육지원청	구례특수교육지원센터	구례군	061-780-6645	
	나주교육지원청	나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나주시	061-330-0116	
	담양교육지원청	담양특수교육지원센터	담양군	061-380-8118	
	목포교육지원청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	목포시	061-280-6481	
	무안교육지원청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무안군	061-450-7025	
	보성교육지원청	보성특수교육지원센터	보성군	061-850-6431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특수교육지원센터	순천시	061-727-5512	
	신안교육지원청	신안특수교육지원센터	목포시	061-240-3617	
	여수교육지원청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	여수시	061-690-0810	
	영광교육지원청	영광특수교육지원센터	영광군	061-350-6685	
	영암교육지원청	영암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암군	061-470-4190	
	완도교육지원청	완도특수교육지원센터	완도군	061-550-0515	
	장성교육지원청	장성특수교육지원센터	장성군	061-390-6132	
	장흥교육지원청	장흥특수교육지원센터	장흥군	061-860-1284	
	진도교육지원청	진도특수교육지원센터	진도군	061-540-5145	
	함평교육지원청	함평특수교육지원센터	함평군	061-320-6645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특수교육지원센터	해남군	061-530-1106	
	화순교육지원청	화순특수교육지원센터	화순군	061-370-7156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특수교육지원센터	안동시	054-805-3272	
	경산교육지원청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경산시	053-819-7620	
	경주교육지원청	경주특수교육지원센터	경주시	054-745-0740	
	고령교육지원청	고령특수교육지원센터	고령군	054-950-2536	
	구미교육지원청	구미특수교육지원센터	구미시	054-453-8354	
	군위교육지원청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군위군	054-380-8234	
	김천교육지원청	김천특수교육지원센터	김천시	054-437-0993	
	문경교육지원청	문경특수교육지원센터	문경시	054-554-3356	
	봉화교육지원청	봉화특수교육지원센터	봉화군	054-679-1797	
	상주교육지원청	상주특수교육지원센터	상주시	054-530-2377	
	성주교육지원청	성주특수교육지원센터	성주군	054-930-2055	
	안동교육지원청	안동특수교육지원센터	안동시	054-858-3363	
	영덕교육지원청	영덕특수교육지원센터	영덕군	054-730-8024	
	영양교육지원청	영양특수교육지원센터	영양군	054-680-2271	
	영주교육지원청	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용주시	054-635-1982	
	영천교육지원청	영천특수교육지원센터	영천시	054-333-3514	
	예천교육지원청	예천특수교육지원센터	예천군	054-652-2092	
	울릉교육지원청	울릉특수교육지원센터	울릉군	054-790-2292	
	울진교육지원청	울진특수교육지원센터	울진군	054-780-3333	
	의성교육지원청	의성특수교육지원센터	의성군	054-832-1129	
	청도교육지원청	청도특수교육지원센터	청도군	054-370-1134	
	청송교육지원청	청송특수교육지원센터	청송군	054-874-8031	
	칠곡교육지원청	칠곡특수교육지원센터	칠곡군	054-800-8033	
	포항교육지원청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항시	054-242-4532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밀양시	055-716-1780	
	거제교육지원청	거제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제시	055-636-9642	
	거창교육지원청	거창특수교육지원센터	거창군	055-940-6180	
	고성교육지원청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	고성군	055-670-8113	
	김해교육지원청	김해특수교육지원센터	김해시	055-332-2576	
	남해교육지원청	남해특수교육지원센터	남해군	055-860-4141	

시·군·구 긴급전화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서울	강남구	02-545-1391
	강동구	02-3425-8877
	강북구	02-998-1391
	강서구	02-2600-5433
	관악구	02-879-6199
	광진구	02-450-1474
	구로구	02-2620-7391
	금천구	02-2627-2391
	노원구	02-974-1391
	도봉구	02-2091-2391
	동대문구	02-2127-5640
	동작구	02-3280-1392
	마포구	02-3153-8391
	서대문구	02-330-1391
	서초구	02-2155-8910
	성동구	02-2286-6633
	성북구	02-2241-2662
	송파구	02-2147-2391
	양천구	02-2620-3391
	영등포구	02-2670-1391
	용산구	02-2199-7139
	은평구	02-351-6212
	종로구	080-860-1391
	중구	02-2261-1391
	중랑구	02-2094-1391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밀양교육지원청	밀양특수교육지원센터	밀양시	055-350-1480	
	사천교육지원청	사천특수교육지원센터	사천시	055-830-1751	
	산청교육지원청	산청특수교육지원센터	산청군	055-970-3023	
	양산교육지원청	양산특수교육지원센터	양산시	055-372-0127	
	의령교육지원청	의령특수교육지원센터	의령군	055-570-7146	
	진주교육지원청	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진주시	055-740-2081	
	창녕교육지원청	창녕특수교육지원센터	창녕군	055-530-3517	
	통영교육지원청	통영특수교육지원센터	통영시	055-650-8016	
	하동교육지원청	하동특수교육지원센터	하동군	055-880-1991	
	함안교육지원청	함안특수교육지원센터	함안군	055-585-0971	
	함양교육지원청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	함양군	055-960-2742	
	합천교육지원청	합천특수교육지원센터	합천군	055-930-7013	
	창원교육지원청	창원특수교육지원센터	창원시	055-283-8065	
	창원교육지원청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	창원시	055-540-2021	
	창원교육지원청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	창원시	055-250-7695	
제주	제주도교육청	제주특수교육지원센터	제주시	064-710-03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서귀포시	064-730-8135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제주시	064-754-1244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부산	중구	051-466-1391
	동구	051-440-4848
	서구	051-241-1391
	사하구	051-292-1391
	영도구	051-416-1391
	동래구	051-553-1391
	남구	051-607-3400
	연제구	051-851-1391
	부산진구	051-803-1391
	금정구	051-518-1391
	해운대구	051-781-1391
	수영구	051-611-1391
	기장군	051-722-1391
	북구	051-302-1391
	사상구	051-310-5112
대구	강서구	051-974-1391
	중구	053-423-1391
	남구	053-472-1391
	수성구	053-666-1391
	달서구	053-631-1391
	달성군	053-262-1391
	동구	053-956-1391
	북구	053-351-1391
	서구	053-566-1391
	중구	032-751-1391
인천	동구	032-777-1391
	미추홀구	032-881-1391
	부평구	032-509-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광주	옹진군	032-883-1391
	서구	032-565-1391
	계양구	032-549-1391
	강화군	032-933-1391
	남동구	032-472-1391
	연수구	032-813-1391
	북구	062-515-1391
	동구	062-608-8820
	남구	062-671-1391
	서구	062-601-0391
	광산구	062-941-1391
	동구	042-285-1391
	중구	042-222-1391
	서구	042-471-1391
	유성구	042-863-1391
대전	대덕구	042-626-1391
	중구	052-292-1391
	동구	052-235-1391
	북구	052-289-1391
	남구	052-261-1391
	울주군	052-204-1391
	과천시	02-3418-1391
	군포시	031-397-1391
	의왕시	031-455-1391
	의정부시	031-828-2112
경기	양주시	031-8082-5848
	동두천시	031-858-1391
	연천군	031-834-1391
	화성시	031-845-1391
	안성시	031-841-1391
인천	수원시	031-810-1391
	연수구	031-813-1391
	강화군	031-849-1391
	옹진군	031-883-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강원	포천시	031-532-1391
	성남시	031-722-1391
	광주시	031-760-1799
	하남시	010-9285-1391
	양평군	031-771-1391
	고양시	031-966-1391
	파주시	080-500-1391
	김포시	031-980-2278
	부천시	032-625-3868
	화성시	031-5189-1391
	오산시	031-374-1391
	구리시	031-558-1391
	남양주시	031-579-6700
	가평군	031-581-1391
	안산시	031-481-3319
	용인시	031-324-2915
	이천시	031-645-3649
	여주시	031-883~4-1391
	시흥시	031-312-1391
	평택시	031-652-1391
	안성시	031-676-1391
	수원시	031-226-1391
	광명시	02-2681-1391
	안양시	031-383-1391
	춘천시	033-250-3991
	원주시	033-737-2590
	강릉시	033-648-1391
	동해시	033-534-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충북	태백시	033-552-1391
	속초시	033-635-1391
	삼척시	033-573-1392
	홍천군	033-430-2119
	횡성군	033-342-1391
	영월군	010-9635-1391
	평창군	033-330-1391
	정선군	033-560-2988
	철원군	033-452-1371
	화천군	033-442-1391
	양구군	010-6818-1391
	인제군	010-9473-2283
	고성군	033-681-1391
	양양군	033-671-1391
	청주시	043-201-1391
	충주시	043-842-1391
	제천시	043-643-1391
	보은군	043-542-1391
	옥천군	043-733-1391
	영동군	043-742-1391
	증평군	043-836-3391
	진천군	043-537-1391
	괴산군	043-832-1391
	음성군	043-872-1391
	단양군	043-421-1391
충남	천안시	041-566-1391
	아산시	041-533-1391
	당진시	041-358-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전북	금산군	041-751-1391
	공주시	041-853-1391
	논산시	041-736-1391
	계룡시	042-840-3697
	부여군	041-834-1391
	서천군	041-952-1391
	예산군	041-331-1391
	청양군	041-943-1391
	홍성군	041-635-1391
	보령시	041-931-1391
	서산시	041-662-1391
	태안군	041-673-1391
	세종	044-865-1391
	전주시	063-285-1391
세종	완주군	063-241-1391
	진안군	063-432-1391
	정읍시	063-536-1391
	익산시	063-843-1391
	군산시	063-451-1391
	김제시	063-540-1391 010-6767-1391
	부안군	063-584-1391
	고창군	063-564-1391
	임실군	063-644-1391
	무주군	063-324-1391
	남원시	063-626-1391
	순창군	063-653-1391
	장수군	063-350-2127 010-4035-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전남	곡성군	061-360-8253
	순천시	061-746-1391
	구례군	061-781-1391
	광양시	061-791-1391
	보성군	061-852-1391
	고흥군	061-832-1391
	여수시	061-659-5367
	영암군	061-472-1391
	강진군	061-433-1391
	목포시	061-276-1391
	무안군	061-452-1390
	신안군	061-262-1391
	해남군	061-537-1391
	완도군	061-555-1391
	진도군	061-540-1391
경북	영광군	061-353-1391
	장성군	061-395-1391
	담양군	061-380-2833
	화순군	061-371-1391
	나주시	061-331-1391
	함평군	061-322-1391
	장흥군	061-863-1391
	경산시	053-812-1391
	청도군	054-373-1391
	군위군	054-383-1391
	의성군	054-832-1391
	영천시	054-334-1391
	경주시	054-777-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남	문경시	054-552-1391
	영주시	010-8937-1391 010-3597-1392
	봉화군	054-674-1391
	예천군	054-654-1391
	안동시	054-852-1391
	영양군	054-680-6296
	청송군	054-873-1391
	영덕군	054-730-6247
	울진군	010-7380-1391 010-7480-1391
	포항시	054-270-1391
	울릉군	054-790-6213
	고령군	054-956-1391
	칠곡군	054-971-1391
	성주군	054-932-1391
	구미시	054-452-1391
	김천시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상주시	054-534-1391
	양산시	055-382-1391
	밀양시	055-356-1391
	창원시	055-263-1391
	창녕군	055-533-1391
	의령군	055-572-1391
	함안군	055-585-1391
	고성군	055-674-1391
	통영시	055-650-1391
	거제시	055-633-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제주	합천군	055-933-1391 010-4378-1391
	진주시	055-745-1391
	사천시	055-832-1391
	산청군	055-970-6391
	하동군	055-884-1391
	남해군	055-862-1391
	거창군	055-945-1391
	함양군	055-964-1391
	김해시	055-359-1391
	제주시	064-728-2670
	서귀포시	064-760-091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02-2040-4242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	02-2247-1391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강서	02-3665-5183~5	강서구, 양천구
	서울은평	02-3157-1391	종로구, 은평구
	서울영등포	02-842-009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	02-923-5440	도봉구, 강북구
	서울마포	02-422-1391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서울동남권	02-474-1391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노원구	02-974-1391	노원구
	서울성북구	02-2039-5472	성북구
부산	부산광역시	051-791-1391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051-715-1391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서부	051-711-13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부산남부	051-791-1360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대구	대구광역시	053-422-1391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남부	053-623-1391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	053-710-1391	동구, 북구, 서구
인천	인천광역시	032-434-1391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북부	032-515-1391	계양구, 부평구
	인천남부	032-424-1391	남동구, 연수구
	인천서부	032-563-0153	서구, 강화군
광주	광주광역시	062-385-1391	서구, 광산구
	빛고을	062-675-1391	북구, 동구, 남구
대전	대전광역시	042-254-6790	동구, 중구, 대덕구
	대전서부	042-716-2020	서구, 유성구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울산	울산광역시	052-245-9382	중구, 동구, 북구
	울산남부	052-256-1391	남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031-245-2448	경기도
	경기북부	031-874-9100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경기성남	031-756-1391	성남시, 하남시
	경기고양	031-966-1391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경기부천	032-662-2580	김포시, 부천시
	경기화성	031-227-1310	화성시
	경기남양주	031-592-9818	남양주시, 가평군
	안산시	031-402-0442	안산시
	경기용인	031-275-6177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시흥	031-316-1391	시흥시
	경기평택	031-652-1391	평택시, 안성시
	수원	031-8009-0080	수원시
	광명시	02-897-1577	광명시
	안양시	031-468-9821	안양시
	구리시	031-523-3163	구리시
	군포시	031-8042-7395	군포시
	광주시	031-8027-0171	광주시
	의왕시	031-360-1391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031-839-0940	파주시
오산시	오산시	031-8077-9610	오산시
	김포시	031-8049-3891	김포시
	양주시	031-856-9001	양주시, 동두천시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강원도	강원도	033-244-1391	춘천시, 화천군, 흥천군, 양구군, 철원군
	강원동부	033-644-1391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강원서부	033-766-1391	원주시
	강원남부	033-535-5391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강원중부	033-344-539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043-216-1391	청주시
	충북북부	043-645-9078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043-731-3685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북중부	043-535-1391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041-578-2655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남부	041-734-6640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서부	041-635-1106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충청남도중부	041-546-1391	아산시, 당진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063-715-1391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전주시
	익산시	063-852-1391	익산시
	군산시	063-734-1391	군산시
	남원시	063-635-1391	남원시
	전주시	063-715-1371	전주시 덕진구
전라남도	전주완산	063-715-1371	전주시 완산구
	전라남도	061-753-5125	곡성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고흥군, 여수시
	전남서부권	061-285-1391	영암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중부권	061-332-1391	영광군, 강진군, 나주시, 함평군
경상북도	전남북부권	061-870-7200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장흥군, 보성군
	경북남부	054-745-1391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경북북부	054-853-1391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경북동부	054-284-1391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 울릉군
	경북서부	054-455-1391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상남도	경상남도	055-244-1391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 장녕군, 고성군, 의령군
	경남서부	055-757-1391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김해시	055-322-1391	김해시
	창원시	055-322-1391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양산시	055-367-1391	양산시
제주	진주시	055-762-1391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391~2	제주시
	서귀포시	064-732-1391	서귀포시

▶ 참고자료

- 교육부, 유스메이트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202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경찰청,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 교육부(2016).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 지정 교육복지중점연구소(2020).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 교육부(2023).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 노혜련, 김윤주 역(2015). 해결중심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Young, S. 2009, Solution –focused school: Anti-bullying and beyond). 학지사
- 변성숙·변국희(2020).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 아동학대·학교폭력·학적위반·교권침해 대응 솔루션. 졸쓸한암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학대 대응 업무메뉴얼 1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학대 대응 업무메뉴얼 2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2020).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안내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6). 장애인 학대지표 및 실태조사 도구개발 연구
-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3). 가정폭력 피해대상 유형별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개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경남지방경찰청(2019).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17). 학교를 위한 아동학대 회복지원 안내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 Legano, L. A., Desch, L. W., Messner, S. A., Idzerda, S., Flaherty, E. G., ABUSE, C. O. C., ... & Yin, L. (2021)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3).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3.2.28.인출

[교육부]

연구진

어 주 경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공동대표)
김 승 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
최 희 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부대표)
변 국 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 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변 성 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차 민 희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집필진

김 경 익 (울산교육청 장학사)
김 용 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 운 학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
서 영 범 (비봉초등학교 교사)
유 정 민 (별마음심리상담센터 대표 / 前 특수교사)
정 재 영 (감일유치원 원감)
차 현 진 (삼평유치원 원감)

자문진

김 영 미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

검토진 | 연구협력관

김 보 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김 경 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연구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과장 윤재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정호재

집필 및 자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조일숙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윤미정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전향배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양미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삼우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승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인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민정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배수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조정화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고민수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진경희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용 가이드북



발 행 일 2023년 6월

발 행 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032-420-8440

홈 페 이 지 <http://www.ice.go.kr>

※ 본 가이드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22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
니다